

목 차

1. 법무·법률

임원의 권한과 책임

2. 회계·세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세 신고

3. 인사·노무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과 보험료 변경 확인요령

4. 자금조달

우선출자 진행 절차

5. 조직변경

인허가 및 업력 승계 여부 검토

23년 6월의 경영정보[법무·법률]

법무법인 더함

임원의 권한과 책임

Q) 협동조합과 임원 사이에는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이사장과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상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임원들은 협동조합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관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 1801 결정).

그런데 위임관계에서는 임원이 협동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기본법은 본인-대리인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임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임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임원은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임직원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협동조합에 특유한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따라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아가,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임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처벌은 어렵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임원은 어떤 경우에 민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임원의 의무와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따라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인하여 협동조합과 조합원, 채권자 등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임원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바, 이사회 등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경영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책임의 발생여부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